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0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구단502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6. 30.
판 결 선 고	2015.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1,237,390원, 지방교육세 16,733,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구 B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2. 10. 26.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자동차 정비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23. [redacted]구 C 외 3필지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redacted]자동차 지정 종합정비업을 영위하던 D 및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와 영업권 등 일체를 대금 30억 원에 매수한 후, 2013.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1. 20.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후 2013. 11. 27. 피고에게 자동차관리사업(종합정비업)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612,695,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본점 사무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을, 본점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정비공장 및 고객대기실(이하 '이 사건 공장 및 대기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일반세율을 각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120,344,420원, 농어촌특별세 5,225,380원, 지방교육세 13,618,0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공장 및 대기실은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인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2014.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및 대기실[1]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취득세 91,237,390원, 지방교육세 16,733,53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1) 여기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① [redacted]구 C 공장용지 1321.1㎡, ② F 도로 87㎡가 포함되어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08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장 및 대기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정한 도시형공장에 해당하고, 도시형공장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6호에서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장 및 대기실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앞서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공장 및 대기실이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자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도시형공장으로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들은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공장 및 대기실이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법상 공업지역 제외)에서의 공장 신설,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경우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6호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자동차 종합수리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8항은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세 중과세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 1. 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표 2] 제28호에서는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수리업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자동차 종합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공장 및 대기실은 도시형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세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08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납부의무자가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납부의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내에는 부족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비과세 또는 감면 결정을 하였더라도, 추후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비과세 결정 등을 번복하고 다시 과세처분을 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2919 판결 참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공장 및 대기실이 도시형공장으로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장 및 대기실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08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 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 1. 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08

[별표 2] 공장의 종류(제7조 제1항 관련)

27. 자동차수리업

2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6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수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도시형공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II. 분류항목표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끝>